

이천시 법령집등 보관 및 관리 규정

다만, 시장, 부시장실 법령집 등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감사법무담당관은 법무담당, 담당직제가 없는 부서에서는 서무담당자가 하여야 한다.

② 가제정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수록상황 등을 기재하고, 정리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변상) 법령집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책임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당해 직상급자는 제3조에 의한 추록가제정리 사항을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2·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3·8·23 훈령 제21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 훈령 제274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이천시 법령집등 보관 및 관리 규정」 제4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 시정담당”을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으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은 법무통계담당”을 “감사법무담당관은 법무규제개혁담당”으로 한다.

⑥ 내지 ⑰ 생략

부칙 <2023·3·6 훈령 제315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이천시 법령집등 보관 및 관리 규정」 제4조제1항 단서 중 “자치행정과 자치행

정담당”을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으로 하고, “법무규제개혁담당”을 “법무담당”으로 한다.

⑨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2024·7·1 훈령 제328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이천시 법령집등 보관 및 관리 규정」 제4조제1항 단서 중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을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으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